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 동향

I. 개정 대상

법령명	Gesetz über den Versicherungsvertrag
약칭	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
최초 제정일	1908. 05. 30. 제정, 1910. 01. 01. 발효
최종 개정일	2006. 12. 19. 개정, 2006. 12. 23. 발효
성격	보험업자(Versicherer)와 피보험자(Versicherungsnehmer)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

II. 개정 배경과 진행경과

1. 개정 배경

- 지금 시행중인 보험계약법은 개별적 위험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정보의 우위 때문에 보험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졌다. 보험계약법이 처음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보험사의 보험 기술상 지식이 부족하여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었으며 반면에 피보험자는 정부가 보험사를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있어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 수락과 통계학의 발전으로 보험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보험사의 보호가 이전 만큼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보험시장의 규제 완화로 오히려 피보험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

- 현행 보험계약법상 소비자 보호 수준이 시대적 요구에 더 이상 상응하지 못하고 있고, 현 보험계약법의 단편적인 개정이나 보완만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의 법정채상의 변화와 실제적인 보험거래상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전체 보험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따라 개정법안이 마련된다.
- 또한 이번 개정 법안은 2005년 7월 26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 생명보험 계약시 피보험자의 미실현 이윤참여권(Überschussbeteiligung)에 관한 결정-과 2005년 10월 12일 연방 법원이 최소 환급금 산정(Berechnung von Mindestrückkaufwert)과 관련해 내린 판결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2. 개정 목적

이번 보험계약법 개정은 지난 날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전한 점과 보험시장 규제완화로 생긴 여러 가지 변화를 감안하여 특히 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고, ② 보험자와 피보험자간 이해를 균등화하며, ③ 현 생명보험계약법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

3. 개정 입법 진행경과

2006. 12. 11	연방정부보험계약법 개정 입법안 확정
2007. 02. 01	보험계약법 개정안 하원 심의 시작
2008. 01. 01	연방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해 놓음으로써 발효 예정

III. 확정된 주요 내용

1.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치

(1) 피보험자와 상담과 정보제공 개선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가입자에게 한층 더 나은 상담서비스(beraten)와 정보를 제공(informieren)하여야 한다. 상담내용은 문서화하여야 하며, 계약관계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자문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려고 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지불 없이 보험계약을 지속할 수 있음을 알려(hinweisen) 주어야 한다.

① 상담의무

보험사의 상담은 보험가입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상담 내용은 문서화되도록 의무화 하고 있어, 차후 분쟁 발생 시(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자문 오류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려고 할 때) 피보험자의 증거제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는 ① 단순 보험계약(einfache Versicherung)이거나, ② 이미 포괄적으로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서면상의 의사표시를 통해 자문/문서화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상담 포기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포기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예 : 증거제시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준 후에 라야 유효하다.

만일 보험계약이 자영 중계인(selbstständige Vermittler)을 통해 이루어 질 경우 상담의무는 중계인에게 적용된다. 만일 보험회사나 중계인이 자문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② 통지의무

보험사는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에게 계약 규정과 일반 보험조건에 대해 알릴의무가 있다. 보험증서 교부와 동시에 계약자료를 보내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가능한 조기에 광범위하게 알고자하는 소비자의 이해에 상응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보험가입자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야 하는 지는 세부 법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서비스의 통신판매를 이용한 금융 거래(Fernabsatz von Finanzdienstleistung)에 관한 유럽연합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물론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선언 이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일반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정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서면 선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 계약체결 이전 신고의무(Anzeigepflicht) 사항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Textform¹⁾로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보험계약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자의 평가 오류는 더 이상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제척기간(Ausschlussfrist)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민간 의료보험의 경우 3년이며, 보통은 5년, 고의 혹은 악의적인 경우 10년이다.

(3) 책임보험(Pflichtversicherung)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적 청구권 인정

모든 유형의 책임보험에서 앞으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보험계약법은 현재 자동차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책임보험규정을 받아들여 앞으로 모든 책임보험들에 적용한다. 이로써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간편해진다.

2. 이해관계의 공정한 균형

(1) 일반 철회권(Allgemeines Widerrufsrecht)의 적용

앞으로 모든 보험계약은 계약을 맺은 경로(Vertriebsweg)와 상관없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철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통신판매계약²⁾(Fernabsatzvertrag)에 대해서만 이 철회권이 적용되었었다. 이밖에도 새 법에 따르면 일반 보험가입자 뿐만 아니라 수공업자와 프리랜서들을 포함한 모든 보험가입자들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체결 후 2주이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30일이다.

(2) ‘모’ 아니면 ‘도’ 원칙(Alles oder Nichts-Prinzip) 원칙 폐기

보험계약체결 후 피보험자가 고지의무(Anzeigepflicht)를 위반했을 때, 피보험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를 정한다. 이로써 지금까지 적용되던 모 아니면 도 원칙은 폐기하도록 한다.

지금까지는 피보험자가 중과실(grob Fahrlässig)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계약과 관련 어떠한 보상요구도 할 수 없었다. 한편, 경과실을 범했을 경우에 피보험자는 완전 보상요구를 할 수 있었다. 즉, 모 아니면 도 원칙이 적용되었었다.

이번 개정 법안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인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보험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며, 따라서 완전 보상요구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보험 보상액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에서의 책임 정도에 따라 삭감할 수 있으며, 이전처럼 보험보상 자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보험료의 불가분성원칙(das Prinzip der Unteilbarkeit der Prämie)의 폐기

새 법안은 보험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보험회사에 의해 해지되거나 또는 해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 -----

- 1) Textform : schriftliche Form와 구별되며 schriftliche Form은 서면에 쓰여진 형태로 우편으로 전달가능해야 하며, Textform의 경우 e-mail로도 가능한 형태.
- 2) 통신판매계약(Fernabsatzvertrag)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원거리 통신수단(Fernkommunikationsmittel)을 이용하여 체결한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계약.



종결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그 시점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계약기간 중에 종결되는 경우에도 년간 총 보험료(보통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되어 있다)를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료 납부지연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2006년 7월 1일자로 해제하였으나 실제 보험계약기간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경우 현행 법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12월 달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6월 달치의 보험료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4) 제소기간(Klagefrist)의 폐지

이번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제소기간의 폐지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자가 보험보상요구를 서면으로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는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보상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소멸시효를 단축으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특별 규정은 새 법안에 따르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 생명보험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

(1) 이윤(Überschuss)에 대한 요구권

피보험자의 미실현 이윤에 대한 요구권 인정이 일반적인 경우로 자리 잡게 된다. 이로써 피보험자는 처음으로 미실현 이윤³⁾(stille Reserve) 배분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게 된다.

2005년 7월 26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보험자의

미실현 이윤 배분 요구권에 관한 판결에서 앞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로 미실현 이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도 적절한 수준으로 미실현 이윤 배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실현 이윤을 공개하고 매년 피보험자에게 그에게 해당되는 액수들 알릴 의무가 있다.

피보험자의 보험료에서 발생된 미실현 이윤의 절반은 보험계약 종결 시 피보험자에게 배분해야 하며, 나머지 절반은 가치변동 따른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에 남겨둔다.

이 법의 발효와 동시에 모든 피보험자가 이 권리를 가지게 된다. 법의 발효 이전 기간에 대한 미실현 이윤에 대한 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잔여기간에만 인정된다.

(2) 모델 산정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얼마의 액수가 예상되는지 알려야 하며, 이때 그 내용은 현실성을 띄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이 액수가 예상액수이며, 보장된 액수가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미실현 이윤의 산정 시 기업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는 모델산정(Modellrechnung)을 통해 기초 계약만료시의 지불되는 액수가 나타나도록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3) 현금가치의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현재 해약환급금은 보험의 현재가치(Zeitwert)라는 불명확하면서, 불투명한 개념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약환급금(Rückkaufwert)은 지급준비금⁴⁾(Deckungskapital)에 따라 산정하도

3) 미실현 이윤(stille Reserve) : 기업의 장부가치와 실제 가치 간의 차액을 의미.

록 할 예정이다. 이것은 보험계약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내용은 연방법원이 2005년 10월 15일 내린 판결 내용과도 일치한다. 이로써 분쟁이 생긴 경우 해약환급금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고액의 해약환급금을 주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아니나 지급준비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해약환급금은 일반적으로 현재가치에 기준하여 산정된 액수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4) 보험 계약체결비용 정산기간 연장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체결비용은 계약 후 2년에 걸쳐 납부 보험료에서 정산하여 왔으며 현행 법에 따른 경우, 피보험자가 조기에 계약을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다. 개정 보험계약법에 따르면 앞으로 생명보험 계약체결 비용이 계약 후 첫 5년에 걸쳐 분할 정산된다. 이로써 계약 체결 후 초기 해약환급금은 커지게 된다.

(5) 계약 체결비·마케팅비용과 관련한 투명성

생명보험 뿐 아니라 민영 의료보험도 각각의 보험 계약체결비와 마케팅비를 수치화하여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IV. 보험계약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이번 법 개정은 특히 소비자에게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보험사가 중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약환급금 산정의 투명성과 법적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 -----

4) 지급준비금 :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보상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

노후보장수단의 하나인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지위가 현저하게 나아지고, 보험시장의 투명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정보향상과 보험시장의 투명성 향상은 보험사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보험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 참고자료

현행 보험계약법

<http://bundesrecht.juris.de/bundesrecht/vvg/gesamt.pdf>

보험계약법 개정 법안

<http://www.bmj.bund.de/files/-/1320/RegE%20VVG.pdf>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한 자료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s20050726_1bvr078294.html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pressemitteilungen/bvg05-066.html>

http://www.bmj.bund.de/enid/734f7bedbc4b006139d4412ee68ce512,6ee5bc706d635f6964092d0931363931093a095f7472636964092d0933303334/Pressemitteilungen_und_Reden/Pressemitteilungen_58.html

http://www.bmj.bund.de/enid/734f7bedbc4b006139d4412ee68ce512,0a6d5a706d635f6964092d0932323138093a095f7472636964092d0933303334/Pressemitteilungen_und_Reden/Pressemitteilungen_58.html



ungen_58.html

독일연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자료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id=7f0d3263dbb73d83ac7c16ccaa7e12ce&nr=34190&pos=1&anz=3>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py?Gericht=bgh&Art=en&id=7f0d3263dbb73d83ac7c16ccaa7e12ce&nr=34000&linked=pm&Blank=1>

보험계약법 개정과 관련한 전문가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전문 : http://www.bmj.bund.de/files/-/667/VVG_Abschlussbericht2004.pdf

요약본 : http://www.bmj.bund.de/files/-/668/VVG_Summary.pdf

개정과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

<http://www.bmj.bund.de/enid/734f7bedbc4b006139d4412ee68ce512,d625e3706d635f6964092d09>

[32333537093a095f7472636964092d0933303334/Pressemitteilungen_und_Rednen/Pressemitteilungen_58.html](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Artikel/2006/02/2006-02-09-mehr-rechte-fuer-versicherte.html)

http://www.bundesregierung.de/nn_774/Content/DE/Bulletin/2007/02/11-2-bmj-bt.html

http://www.bmj.bund.de/enid/734f7bedbc4b006139d4412ee68ce512,6ee5bc706d635f6964092d0931363931093a095f7472636964092d0933303334/Pressemitteilungen_und_Rednen/Pressemitteilungen_58.html

<http://www.lernpark.de/ueber-die-organisationen-im-bildungsnetzwerk/dva/aktuelle-entwicklungen-in-der-branche/vvg-reform/uebersicht-ueber-die-wichtigsten-inhalte/index.html>

오윤섭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